

공무원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의안의 정리)본회의는 의안의 의 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 구,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 에는 이를 <u>의장 또는 위원회에</u> 위임 할 수 있다.	제26조(의안의 정리) 자 구 <u>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</u> <u>공무원에게</u>

[14] 휴회의견

제의년월일 : 1993. 7. 24.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함.

제안이유

양주구수가 채출하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

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. 30 - 8. 4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
하고자 함.

【 15 】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查報告書

1993년 8월 5일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7월 24일 양주군수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'93. 7. 29 - 8. 3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, 토론, 의결.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양주군 부군수 윤명노)

가.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 및 규모

- 금번 추경예산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삭감등 예산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.
-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투자사업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도나 중앙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.
- 당초예산 성립이후 보조사업 계획이 수정, 변경, 추가 되었고 통합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기구 및 인력의 조정